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주식회사 흥인더스 소유물건(2025타경33362)

의뢰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최보경

감정서번호 : M2025-0428-1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명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명성숙

(인)

감정평가액	일십육억사천구백사십일만원정 (₩1,649,41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최보경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8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홈인더스 (2025타경33362)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5. 08	2025. 05. 08	2025. 05. 11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단가	금액
	토지	1,600	토지	1,600	830,000	1,328,000,000
	건물	268	건물	268	580,000	155,440,000
	제시외물건	(718)	제시외물건	(718)	-	165,970,000
		이	하	여	백	
	합계					₩1,649,41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소재 '대명1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5월 8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5월 8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 ② 본건 지상에 제시외물건 ㉠~㉢이 소재하는 바, 개략적인 실측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음(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23	
토 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이용상황	공업용
	지 목	공장용지
	면 적	1,600 m ²
건 물	구 조	일반철골구조
	주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2014.02.11
	연 면 적	268 m 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2) 건물의 평가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건물감정평가액 (원가법)

1. 토지 감정평가액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m ²)
1	대곶면 대명리 23	1,600	공장 용지	공업용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평지	358,500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m ²)
A	대곶면 대명리 23	1,600	장	공업용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평지	366,200

※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동일필지임.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계획관리	0.782	경기도 김포시 (25.01.01~25.05.08) 2025.01.01 ~ 2025.03.31 : 0.537 2025.03.01 ~ 2025.03.31 : 0.199 $(1 + 0.00537) * (1 + 0.00199 * 38/31) \approx 1.00782$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개별요인 비교

■ 공업지대 [일련번호 1/표준지 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환경 조건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공업용수		
		공장배수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면적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형상		
		고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기타
-	소규모 공장지대	세로변	700,000-800,000	계획관리

(다)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비고
(1)	대곶면 대명리 36*	401	계획관리	공장용지 공업용	2024.06.24	법원경매	926,000	-
(2)	대곶면 대명리 8*	2,096	계획관리	공장용지 공업용	2024.12.31	자산재평가	896,000	-
(3)	대곶면 대명리 3*	1,545	계획관리	공장용지 공업용	2024.11.20	담보	870,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대곶면 대명리 86-*	계획관리 공장용지/공업용	1,815,000,000원 (@ 785,000원/m ²)	2024.05.02 2007.12.30	1,853m ² 748.2m ²	-
	의견	1)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지붕 1층 공장 건물단가 : 800,000원/m ² X 24년/40년 ≒ 480,000원/m ² 건물가격 : 480,000원/m ² X 748.2m ² ≒ 359,136,000원 2) 토지가격 : (1,815,000,000원 - 359,136,000원) / 1,853m ² ≒ 785,000원/m ²				
#2	대곶면 대명리 8*	계획관리 공장용지/공업용	1,195,000,000원 (@ 636,000원/m ²)	2024.05.28 2013.11.19	1,395m ² 511.1m ²	-
	의견	1) 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1층 공장 건물단가 : 800,000원/m ² X 30년/40년 ≒ 600,000원/m ² 건물가격 : 600,000원/m ² X 511.1m ² ≒ 306,660,000원 2) 토지가격 : (1,195,000,000원 - 306,660,000원) / 1,395m ² ≒ 636,000원/m ²				
#3	대곶면 대명리 77-*	계획관리 대/공업용	1,240,000,000원 (@ 680,000원/m ²)	2023.06.27 2007.08.10	1,427m ² 536.78m ²	-
	의견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건물단가 : 800,000원/m ² X 25년/40년 ≒ 500,000원/m ² 건물가격 : 500,000원/m ² X 536.78m ² ≒ 268,390,000원 2) 토지가격 : (1,240,000,000원 - 268,390,000원) / 1,427m ² ≒ 680,000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등)

(마) 경매 동향

용도별	경기 김포시 2024년 05월 ~ 2025년 04월					
구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공장	64,123,795,530	48,379,443,000	75.4	70	27	38.6

(출처 : 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②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¹⁾ (원/㎡)	시점 ²⁾ 수정	지역 ³⁾ 요인	개별 ⁴⁾ 요인	산출단가 ⁵⁾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926,000	1.02054	1.000	0.880	831,617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⁵⁾ (원/㎡)	2.253	2.25
	366,200	1.00782	-	-	369,064		

¹⁾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1)을 선정함.

²⁾시점수정(2024.06.24 ~ 2025.05.08, 김포시 계획관리지역) : 2.054% (1.02054)

³⁾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1)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⁴⁾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1) 대비 접근조건(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에서 열세함.

개별요인 비교치 (공업지대)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0	0.88	1.00	1.00	1.00	1.00	0.880

⁵⁾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²)							
1	A	366,200	1.00782	1.000	1.000	2.25	830,393	830,000	공업지대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대곶면 대명리 86-*	계획관리 장/공업용지	1,815,000,000원 (@ 785,000원/m ²)	2024.05.02 2007.12.30	1,853m ² 748.2m ²	-
	의견	1)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지붕 1층 공장 건물단가 : 800,000원/m ² X 24년/40년 ≒ 480,000원/m ² 건물가격 : 480,000원/m ² X 748.2m ² ≒ 359,136,000원 2) 토지가격 : (1,815,000,000원 - 359,136,000원) / 1,853m ² ≒ 785,000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1 계획관리	2.470	경기도 김포시 (24.05.02~25.05.08) 2024.05.01 ~ 2024.05.31 : 0.235 2024.06.01 ~ 2024.06.30 : 0.235 2024.07.01 ~ 2024.07.31 : 0.232 2024.08.01 ~ 2024.08.31 : 0.205 2024.09.01 ~ 2024.09.30 : 0.201 2024.10.01 ~ 2024.10.31 : 0.192 2024.11.01 ~ 2024.11.30 : 0.193 2024.12.01 ~ 2024.12.31 : 0.177 2025.01.01 ~ 2025.03.31 : 0.537 2025.03.01 ~ 2025.03.31 : 0.199 $(1 + 0.00235 * 30/31) * (1 + 0.00235) * (1 + 0.00232) * (1 + 0.00205) * (1 + 0.00201) * (1 + 0.00192) * (1 + 0.00193) * (1 + 0.00177) * (1 + 0.00537) * (1 + 0.00199 * 38/31) \approx 1.0247$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개별요인 비교

■ 공업지대 [일련번호 1/거래사례 #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1.05	본건이 사례 대비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우세함.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환경 조건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공업용수		
		공장배수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면적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형상		
		고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0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²)						
1	#1	785,000	1.000	1.02470	1.000	1.050	844,608	845,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²)	거래사례비교법 (원/m ²)	비고
1	830,000	845,000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어 수요성, 환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목적에도 부합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다.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일련번호	적용단가 (원/m ²)	사정면적 (m ²)	평가금액 (원)	비고
1	830,000	1,600	1,328,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 건물 감정평가액

(1) 대상 건물의 현황

일련 번호	규모	구조	용도	연면적(m ²)	사용승인일	건물 관리상태
2	1층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136	2014.02.11	중
3	1층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132	2014.02.11	중

(2) 재조달원가 결정

일련 번호	구조	표준단가 (원/m ²)	보정단가 (원/m ²)	재조달원가 (원/m ²)	내용 년수	비고
2, 3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800,000	-	800,000	40	1층 (제조업소)

※ 상기 기준단가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참조하되 본건물의 신축년도, 건축자재, 동 . 유사 규모 및 용도의 신축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향 및 본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2024년 1월 기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m ²)	내용년수
05-01-06-10	일반공장	철골조/철골지붕틀(층고9m) /샌드위치패널	4	886,000	35 (30~40)
05-01-06-10	일반공장	철골조/철골지붕틀(층고6m) /샌드위치패널	3	799,000	35 (30~4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일련 번호	이용상황	재조달원가 (원/m ²)	내용 년수	경과년수		잔존 년수	잔가율	적용단가 (원/m ²)	비고
				실제	유효				
2	1층 (제조업소)	800,000	40	11	11	29	29/40	580,000	-
3	1층 (제조업소)	800,000	40	11	11	29	29/40	580,000	-

(4) 건물가액의 결정

일련번호	구분	적용단가(원/m ²)	사정면적(m ²)	평가금액(원)	비고
2	1층 (제조업소)	580,000	136	78,880,000	-
3	1층 (제조업소)	580,000	132	76,560,000	-
소 계		-	268	155,44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1,328,000,000
	건 물	155,440,000
	제시외물건	165,970,000
	합 계	1,649,410,000

2. 기타 참고사항

-

(토지 ·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23	공장용지	계획관리지역	1,600	1,600	830,000	1,328,000,000	
2	상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학의동로3 4번길 130	위지상 가동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조업소	1층	136	136	580,000	78,880,000	800,000 x29/40
3	상동	위지상 나동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조업소	1층	132	132	580,000	76,560,000	800,000 x29/40
소 계								₩1,483,440,000	
㉠	<제시외물건> 동 소	23	작업장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40㎡	200,000	8,000,000	
㉡	동 소	23	작업장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160㎡	200,000	32,000,000	
㉢	동 소	23	작업장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280㎡	300,000	84,000,000	

(토지 ·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㉔	동 소	23	작업장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88㎡	300,000	26,400,000	
㉕	동 소	23	창고	판넬조		36㎡	50,000	1,800,000	
㉖	동 소	23	화장실	판넬조		3㎡	150,000	450,000	
㉗	동 소	23	사무실	컨테이너		24㎡	120,000	2,880,000	
㉘	동 소	23	사무실	컨테이너		18㎡	120,000	2,160,000	
㉙	동 소	23	사무실	컨테이너		15㎡	120,000	1,800,000	
㉚	동 소	23	사무실	컨테이너		18㎡	120,000	2,160,000	
㉛	동 소	23	숙소	컨테이너		36㎡	120,000	4,320,000	
	소 계							₩165,970,000	
	합 계							₩1,649,410,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소재 '대명1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등이 밀집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제조업소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2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중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기호 (2), (3) 공히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층고 : 8.1m

(2) 이용상태

공히 '제조업소'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본 위생, 급배수 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중물

본건 지상에 제시외물건 ㉠~㉡이 소재함.
(후첨 '지적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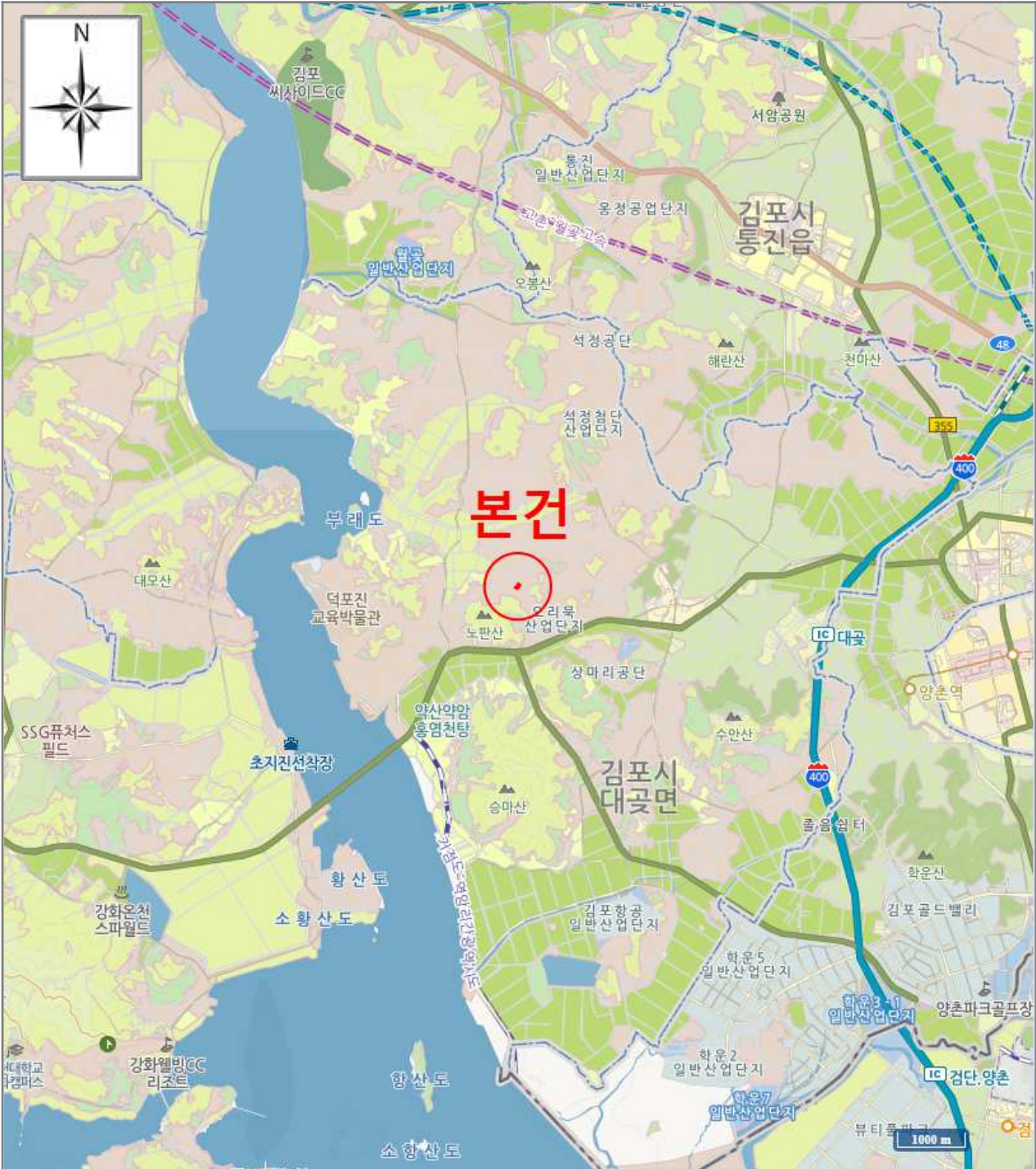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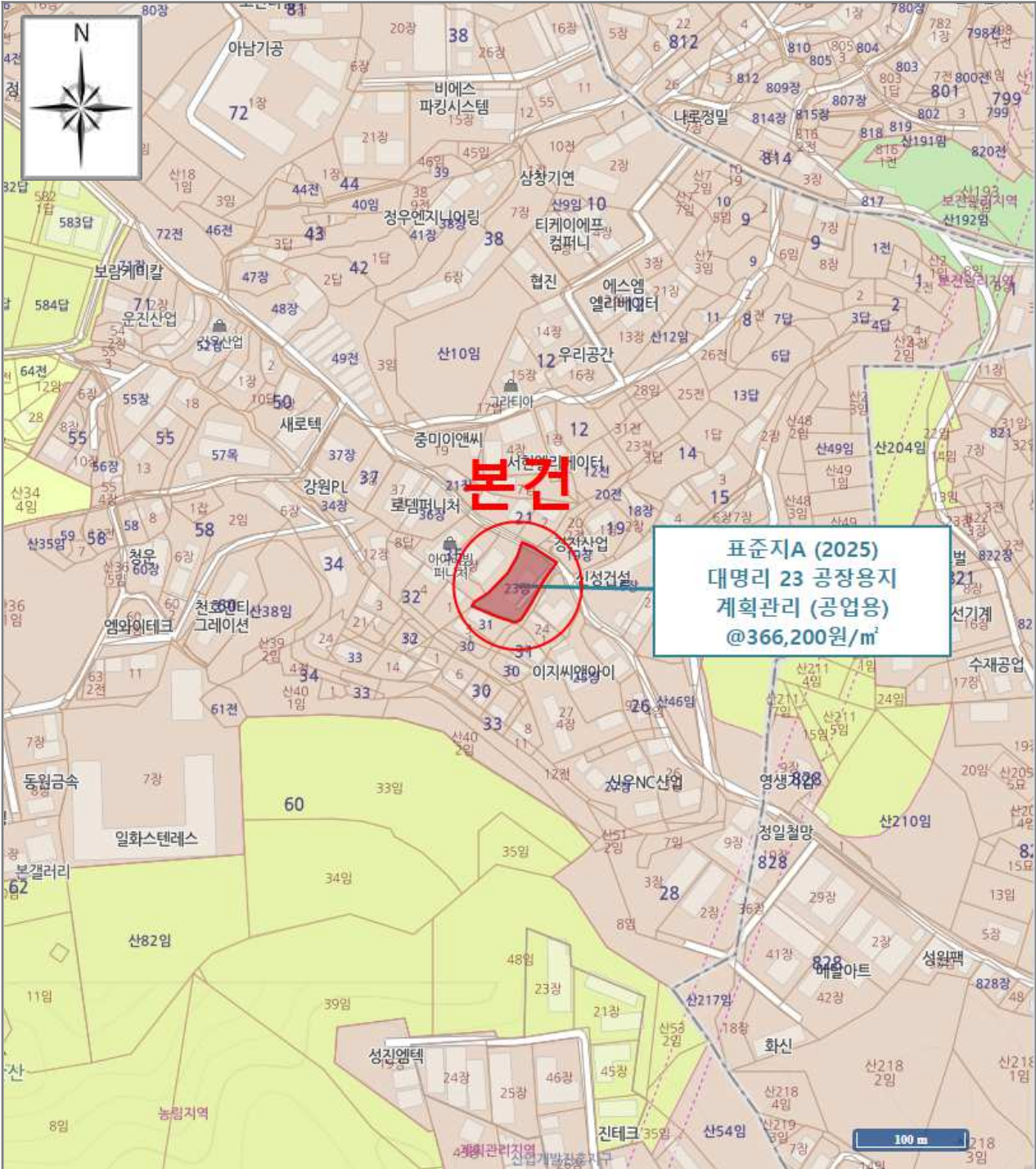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23
-----	--------------------



- [범례]
- 본건
- 표준지
- 평가사례
- 거래사례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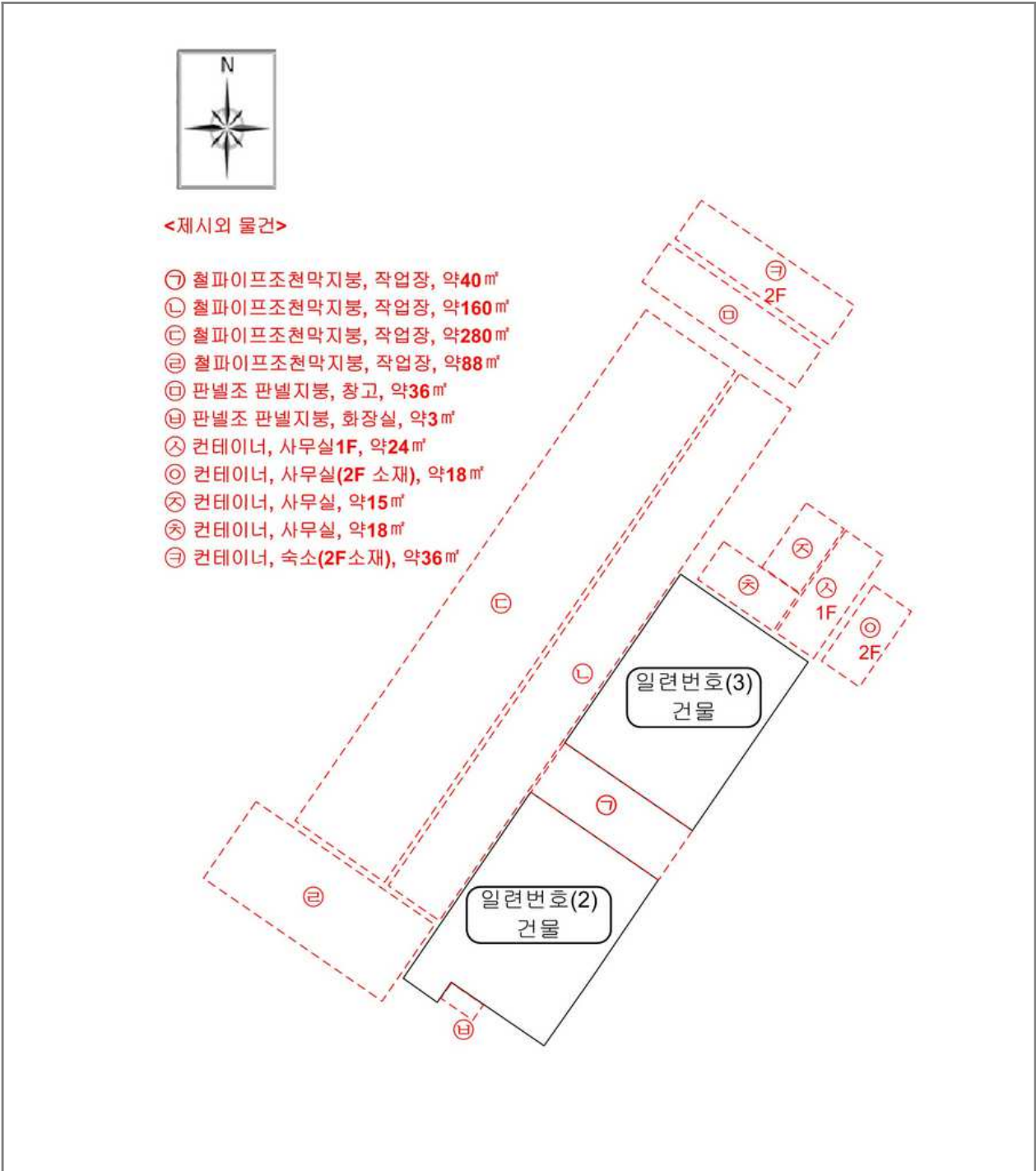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23
-----	--------------------



- [범례]
- 본 건
- 표준지
- 평가사례
- 거래사례

건물개황도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23
-----	--------------------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23



본건 전경



건물 전경



주위 환경



건물(3) 내부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23



제시외 (ㄱ) 내부



제시외 (ㄴ)



제시외 (ㄷ)



제시외 (ㄹ)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23



제시외 (ㄹ), (ㅋ)



제시외 (ㅂ)



제시외 (ㅇ), (ㅅ)



제시외 (ㅈ), (ㅊ)